

사채권자집회 소집공고

2018. 5. 4.

회사명 : 주식회사 STC

대표이사 : 이희춘, 김용석

본점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공단로4길 65

전화 : 031-297-3551

공고의 내용

당사 발행 제7회 기명식 무보증 국내 사모 전환사채(이하 '본건 전환사채')에 대한 사채권자집회가 아래와 같이 소집됨을 공고하오니, 해당 사채권을 보유하고 계신 사채권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 일 시 : 2018년 5월 21일 오전 10:00
2. 장 소 : 주식회사 STC 본점소재지(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공단로4길 65)
3. 목적사항 :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결의집행자 선임의 건과 본건 전환사채의 추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한도 변경의 건(별지 참조)
4. 공고의 근거 : 당사 정관 제4조[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홈페이지(<http://www.sapphiretek.com>)로 한다.]

주식회사 STC

대표이사 이희춘, 김용석



회의의 목적사항

1. 주식회사 STC 발행 제7회 기명식 무보증 국내 사모 전환사채(이하 '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로 구성된 사채권자 집회의 대표자 및 결의집행자로 에스티 케이클라비스 신기술조합 제오호(업무집행조합원 주식회사 케이클라비스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노영석의 대리인 김성묵)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2. 본 사채권자 집회는 2018. 3. 29. 개최된 주식회사 STC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것과 같이, 주식회사 STC 발행 제7회 사모 전환사채에 대하여 주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을 의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3. 본 사채권자 집회에서는 주식회사 STC의 이사회가 위 2.항의 의결내용에 따라 본건 전환사채에 대하여 주가하락에 따라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이사회결의 및 그에 따르는 후속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요청하고자 합니다.

사채권자 집회 소집이유

당사는 2015. 8. 26. 제7회 기명식 무보증 국내 사모 전환사채 권면총액 20,000,000,000원(이하 '본건 전환사채')을 발행하였으며, 본건 전환사채를 발행할 당시 당사의 이사회는 본건 전환사채에 대하여, 『주가하락으로 인한 전환가액 조정의 한도를 최초 전환가액의 70%』로 결정하여 발행하였습니다. 당시 전환가액(최초 전환가액)은 1주당 금 16,547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018. 3. 9. 당사의 주가는 1주당 2,145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전환사채를 인수한 주요 목적(전환권을 행사하여 주가상승에 따른 이익을 누리하고자 함)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사의 입장에서조차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계속해서 이자(발행일로부터 4년 6개월간 연 복리 2%+지연이자, 그 이후 연 복리 4%+지연이자)만 지급할 경우 장기적으로 회사의 재정상태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당사는 2018. 3. 12. 이사회에서 정기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정관변경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 3. 29.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① 시가하락으로 인한 전환가액 조정의 최저한도를 액면가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회사의 모든 전환사채에 적용하며, ② 최종적으로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③ 기발행된 전환사채에도 소급하여 적용』하는 정관변경안이 주주들의 특별결의로 승인되었습니다. 다만, 아직 이와 같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부합하는 이사회 결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본건 전환사채 중 상법 제491조의 사채권자집회 소집청구권자의 자격요건인 전환사채 총액의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에스티 케이크라비스 신기술조합 제오호가 상법 제491조를 근거로 당사에 사채권자집회 소집청구를 하였습니다. 당사는 위와 같은 에스티 케이크라비스 신기술조합 제오호의 청구를 검토한 결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고, 이에 에스티 케이크라비스 신기술조합 제오호의 청구 내용대로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하였기에 위와 같이 당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게 되었습니다.